



금감원,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

채원영 연구원

-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¹⁾를 강화하고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표준적립액을 상향조정하며, 보험상품의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임,
-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첫째, 책임준비금 평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여 금리역마진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됨.
 -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과 보험상품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²⁾에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최근의 높아진 공시이율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.
 - 또한, 조정률 결정 시 회사별로 직전 1년간 적용한 조정률 중 최고수준으로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함.
- 둘째,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 시 보험회사가 자체 추정한 보증수수료율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투자실적 악화에 대비한 지급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음.
 -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험회사가 자체 추정한 위험액이 감독원 표준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도 감독원 표준적립액을 적립할 수 있어 보증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.
- 셋째, 위험 보장기능(부가급부금비율³⁾)을 현행 5%에서 10%로 상향조정하여 보험상품의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금 등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,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경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됨.

(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계리제도 개선, 금융감독원, 11/13)

- 1) 최근의 이자율과 위험률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한 후, 보험계약 체결 시의 이자율과 위험률로 적립된 장부상 책임준비금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.
- 2)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공시기준이율에 $\pm 10\%$ 이내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산출('13. 4월 시행 예정).
- 3) 부가급부금 비율 = [보험사고 발생 시의 지급금 - 보험사고 미발생 시의 지급금] / 보험사고 미발생 시의 지급금